



전기방식 시설의 유지관리

판단기준 제243조

Q

- 판단기준 제243조에는 전기부식방지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기부식방지 시설을 설치 한 후 유지관리 방법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요?

A

1. 판단기준 제243조(전기부식방지 시설)는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과 피 방식체간의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외)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2. 이 기준은 전기부식방지 시설의 신설부터 그 시설물이 소멸 될 때까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신설 후 계속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기 점검 및 시험, 보수, 운전일지 기록 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 기준은 정한 것이 없으므로 각 기관 및 전기설비 시설주가 자체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외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전기사업법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검사하고 있으므로 일반용 전기설비 시설주는 이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10(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 별표11(검사 시기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